

	감사위원회규정	규정번호	3-8-43
		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전략기획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 감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1. 대학 감사에 관한 주요 자문 사항
2. 기타 감사와 관련한 중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략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필요시 총장은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교체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감사 관련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8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전략기획처에 담당한다.

제9조(비밀준수 의무)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원이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외하고,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지원) 대학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